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배상청구기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2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14조(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

제15조(대위권)

제16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8조2(양도)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1조(청약의 철회)
-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23조(계약의 무효)
-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5조(조사)
-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 제27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 제28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 제29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 제30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31조(보험료)
- 제3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37조(계약의 해지)
-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40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1조(분쟁의 조정)

- 제42조(관할법원)
- 제43조(소멸시효)
- 제44조(약관의 해석)
-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47조(개인정보보호)
- 제48조(준거법)
-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 전기공급차질 보상제외 추가약관
-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
 -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추가특별약관
 - ②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판매인특별약관
 - ③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 ④ 주위재산 추가 특별약관
 - ⑤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2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 인격침해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
 - ①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보험료정산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정보기술 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프랜차이즈 공제 특별약관

전염병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특별손해 특별약관

제품교환비용 특별약관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전자파, 전자장(EMF)로 인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오염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징벌적 손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축산물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특정생산물 부담보 특별약관

전문직배상책임보상 특별약관

무사고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하 “방어비용” 이라 합니다)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줍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에 기인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에 기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

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할 때에 아래의 경우를 불문합니다.

1. 피보험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 (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제2호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는 미리 회사의 서면 동의를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29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30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28조 (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9조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보험료)

이 보험증권에 확정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정산하지 않으며, 예치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7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p>생산물</p>	<p>「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 「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p> <p>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p> <p>(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p> <p>(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p> <p>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p> <p>(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p> <p>(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p> <p>(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p>
<p>손상재물</p>	<p>「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p> <p>(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p>

<p>법률상의 손해배상 금</p>	<p>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①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 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p> <p>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 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p>
<p>신체장해</p>	<p>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p>
<p>재물손해</p>	<p>재물 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p> <p>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p>
<p>사고</p>	<p>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 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 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p> <p>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p> <p>【1】 대한민국</p>

보장지역	<p>【2】 아래의 경우에는 전세계</p>
	<p>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한민국의외의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p>
1회의 사고	<p>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p>
공해물질	<p>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p>
테러	<p>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p>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특별약관
(배상청구기준)

전기공급차질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추가약관은 전기 유지·유지보수작업을 보상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약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7. 방수팩 (물이나 습기, 모래 및 먼지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스)
8. 새집증후군 제거제 (새집증후군(새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 및 새 가구 등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가스로 인해 인체에 발생하는 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유독성 가스를 제거,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 또는 물질)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손해사고기준)

※ 해당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타 특별약관과 달리 손해사고기준이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급보장일자에 관한 내용은 해당 특별약관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만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 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 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9.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가’목, ‘나’목 또는‘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다’목 또는‘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제16조(손해배상청구일자), 제27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대상계약), 제28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제29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제30조(선택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설내용	명칭: 소재: 구조 및 용도: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 에 작업이 끝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작업내용 :	

③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석면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소급보장일자) 본 추가특별약관은 아래의 소급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급일자 : 년 월 일

제3조(손해배상의 청구) 본 추가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 ② 어느 하나의 사고(1회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주위재산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의 공사현장 주위에 있는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는 타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입은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⑤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2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④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 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계, 장비, 도구 등에 대한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판매인특별약관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등의 성명 :
주소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점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던 생산물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며, 예치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1.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2. 최근 3개년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최근 3개년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제2조 (정산의 방법)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연간예상매출액 ;

예치보험료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 (나뉘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뉘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3회: 청약일 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4회: 청약일 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뉘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3. 해지 환급보험료: 해지일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 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프랜차이즈 공제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프랜차이즈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프랜차이즈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염병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정의>

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기준	분류	병명
전염병 예방법과 검역법에 의한 분류	제1군 전염병 (6)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제2군 전염병 (9)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제3군 전염병 (18)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쓰쯔가무시증, 렙토스파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특별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자에게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특별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한, 보통약관에서 보상한 지급보험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특별손해비용을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손해 특별약관의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품교환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자에게 피보험자가 지급한 제품의 손상 부분의 교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제품교환비용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상합니다. 교체비용은 교체부분에 대한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1.a)-對消費者用/許容殘留農藥對象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지불한 비용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친환경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구매자(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또는 피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③ 잔류농약 검출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안에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비용손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항의 구매자(소비자)에게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간접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매매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농산물로 인한 손해
3.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 또는 해당 농작물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으로 인한 손해
4. 농약검출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1.b)-對消費者用/全體殘留農藥對象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지불한 비용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친환경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구매자(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또는 피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③ 잔류농약 검출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안에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비용손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항의 구매자(소비자)에게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간접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매매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농산물로 인한 손해
3. 농약검출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2.a)-對流通業體用/許容殘留農藥對象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지불한 비용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친환경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구매자(최종유통업체)가 피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③ 잔류농약 검출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안에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비용손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항의 구매자(유통업체)에게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간접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매매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농산물로 인한 손해
3.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 또는 해당 농산물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으로 인한 손해
4. 농약검출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2.b)-對流通業體用/全體殘留農藥對象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지불한 비용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친환경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구매자(최종유통업체)가 피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③ 잔류농약 검출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안에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비용손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항의 구매자(유통업체)에게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간접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매매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농산물로 인한 손해
3. 농약검출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 (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파, 전자장(EMF)로 인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본 증권은 아래 담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전자파, 전자장에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전체적/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었거나 기인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배상책임

b) 전자파로 인한 재산상의 가치 감소

c) 전자파, 전자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상해와 관련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방어 의무

오염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 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징벌적 손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축산물 특별약관

제 1 조(사고) ①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에 기재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제3항 및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3) 인증기준)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2. 소비자가 구매한 국내산 축산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등급판정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기타 국가에서 공인된 분석기관의 분석 결과 국내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③ 1항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자(소비자)에게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사고 발생상황 또는 그 대응책의 설명 또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사죄를 신문 또는 TV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행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
2. 사과장 작성비용
3. 사고 후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컨설팅비용
4. 이 보험계약과 동종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5. 금리 등 자금조달에 관한 비용
6.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의 보수·급여
7.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대응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또는 중재, 화해 또는 조정애 소요된 비용(손해배상금, 화해금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④ 회사는 제 1 항의 비용을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회사로 직접 청구한 소비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당해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것 또는 타인에 손해를 줄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을 말함)이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 ② 재물의 멸실, 오손, 분실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물적 손해(가치의 감소 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 재조달비용 등을 말함) 및 당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한 손해
- ③ 신체장해를 입은 자에 대해 생긴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밀실이익, 장제료 등)
- ④ 이 보험계약 및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조치와 관계된 비용이상으로 소요된 비용
- ⑥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또는 청구된 것에 관계된 업무를 변호사에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요에 소요된 비용 포함)
- ⑦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법령 등에 의한 규제 또는 요청을 포함)에 의한 개인정보의 차압, 수용, 몰수, 파괴 등, 단, 소방 또는 피난이 필요한 거쳐가 된 경우는 제외
- ⑧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입은 손해(피보험자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불성실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포함)
- ⑨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실수익
- ⑩ 저농약 농산물의 경우 공인된 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된 경우
- ⑪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 ⑫ 제초제,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는 경우
- ⑬ 친환경농산물의 시판 이전에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 ⑭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축산물
- ⑮ 보험기간 중에 동일 작물에 2회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 ⑯ 친환경농산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비용
- ⑰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축산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비용
- ⑱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생산물이력추적 제도가 시행되는 축산물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축산물
- ⑲ 도축증명서 없이 유통된 국내산 축산물
- ⑳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축산물 생산자, 축산물 수입업자, 수출업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 등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제 3 조(하나의 사고의 정의) 이 특약조항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를 불문하고,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전체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보상기간) 이 특약조항에 있어 보상기간이란 사고의 대응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말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당 회사 중 누군가가 최초로 발견한 때에 시작하여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때에 끝납니다.

제 5 조(손해액의 산정) 이 보험계약에 있어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것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회수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공인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증명서류
2. 영수증 등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등급판정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기타 국가에서 공인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증명서류

제 7 조 (보상한도)

- ① 회사는 이 특약조항에 의해 확정된 보상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비율만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사고 및 보험기간 중에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8 조(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손해액-자기부담금) × 제7조 (보상한도) 제 1항의 공동비율()%

제 9 조(용어정의)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10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특정 생산물 부담보 특별약관

특정 생산물 내용 :

(위의 기재란에 생산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특정 생산물의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배상책임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부당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아래의 사유에 따른 재정적 손실
 - 1.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불충분, 위험한 상태
 - 2. 계약 또는 합의서의 조항에 따른 기준에 제품의 성능이 미달하거나 서비스 수행에 실패하는 것
- ②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하는 때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 1. 피보험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통지를 수취하고 기록한 경우
 - 2. 회사가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③ 개인이나 단체에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따른 피해의 손해배상청구는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조정, 조사, 리콜, 반환 비용

회사는 제품, 제품을 포함하거나 장착한 재물, 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는 재물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에 의해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되어 제품, 제품을 포함하거나 장착한 재물, 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는 재물의 사용불능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항공기 제품

회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항공기 제품, 미사일, 우주선에서 기인하는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비행기, 미사일, 우주선과 관련된 물품, 장비, 원재료, 부품 또는 예비 부품
- (2) 항공·우주 통신, 유도·항해 장비
- (3) 위 (1), (2)와 관련된 지상통제 취급·보조 장비, 도구
- (4) 위에서 언급된 것들의 제조, 수리,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도구
- (5) 위에서 언급된 것들과 관련된 도면, 설계도, 그림, 정보, 설명서, 매뉴얼, 지도, 의견서, 보고서, 안내문, 소프트웨어, 진술서, 명세서, 조사보고서, 교육보조서, 경고문, 보증서, 기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
- (6) 위에서 언급된 것들과 관련된 기술, 기타 조언, 지시, 노동 및 서비스

3. 지원 중단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되었거나, 주장되거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로 인한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지 않은 경우
- (2) 피보험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4.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

회사는 아래의 계약 기간의 종료 이후 계속되거나 재개된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상, 멸실,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본 보험계약
- (2) 회사에 의해서 발행된 갱신계약 또는 본 보험계약의 대체계약

5. 제품의 인도지연 또는 인도실패

회사는 제품의 인도지연 또는 인도실패가 발생하였거나, 주장되거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의 수행지연 또는 실패

회사는 서비스의 수행지연 또는 수행실패가 발생하였거나, 주장되거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7. 부정행위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해진 부정행위, 형사상 행위, 사기행위, 악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8. 고용 관련 행위

(1) 회사는 발생시기, 기간, 피보험자에 의한 고용 행위 등을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고용과 관련하여 법률, 태만, 정책, 관습 등과 관련된 손상, 멸실,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체포, 구류 및 수감

(나) 계약의 적용 및 표시에 관한 위반

(다) 강압, 비판, 굴욕감을 주는 행위, 기소 또는 보복

(라) 비방 또는 비난

(마) 격하, 징계, 평가 또는 재위탁

(바) 차별, 괴롭힘 또는 인종차별

(사) 침입 또는 기타 관련법 관련 위반

(아) 승진, 보상, 고용 또는 진급의 실패 및 거절

(자) 프라이버시 또는 공표 권리의 침해 또는 위반

(차) 고용의 종료

(카) 시기를 막론하고 피보험자와 관련된 기타 고용관련 법률, 태만, 정책, 관습, 표현, 관계 등

(2) 회사는 위(1)에 연루된 개인의 형제,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발생한 고용과 관련하여 법률, 태만, 정책, 관습 등과 관련된 손상, 멸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위 (1), (2)는 피보험자가 상기에서 언급된 모든 사례로 인해 의무를 지게 되는 타인과 그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 개선, 관리 또는 손해방지 비용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타인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상, 멸실,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제품을 포함하거나 장착한 재물, 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는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이 입은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재물의 기능개선 및 관리

(2) 재정적 손실의 방지

10. 예상 가능하거나 의도된 재정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피보험자의 재정적 악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기타 재정적인 악화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 멸실,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정부관련 단체의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절차

회사는 정부단체, 공권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되거나 소송에 따라 발생한 손상, 멸실,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 관리 또는 사용하는 정부단체,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이나 권한과 관련된 손실

회사는 주장, 침해, 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상, 멸실,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라이선스 또는 계약의 유지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지, 획득,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는 보증, 보험, 임대, 라이선스, 오더, 허가 또는 기타 계약 및 합의서의 내용과 관련된 발생했거나, 주장되거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로 인해 다음의 것들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효력상실, 유지실패, 취득실패 또는 안정성 확보실패

(2) 취소, 착오, 변경, 갱신실패, 폐지, 중지 또는 기타의 악화상태

15. 인격 침해

회사는 아래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개인의 체포, 구류, 또는 수감

(2) 비방 또는 비난

(3) 차별, 괴롭힘 또는 인종차별

(4) 침입 또는 기타 관련법 관련 위반

(5) 프라이버시 또는 공표 권리의 침해 또는 위반

(6)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소

16. 특정분야의 전문서비스

회사는 아래 (1) 또는 (2)와 관계없이, 아래(3)에 기재된 전문서비스의 제공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멸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고객 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된 클레임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활동이 보험계약자 통상적인 업무인지 여부

(3) 면책되는 전문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계 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나) 보험계리 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또는 서베이 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라) 법률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마) 보건의료 서비스, 자문 또는 교육연수

17. 보안 위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사항들과 관련한 보안 위반, 허가되지 않은 접근 또는 사용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제품

(2) 제품이 포함되거나 장착된 모든 재물

(3) 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는 모든 재물

제3조(용어정의)

① 「재정적 손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재산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전자 형식의 정보를 포함)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이 떨어진 경우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2.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로 인해 발생한, 제1호에 기술된 경제적 손실 부분만을 포함합니다.

3. 제품이나 서비스(또는 일부)는 이의 인수 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수된 것만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제품의 기능 또는 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
- (2) 인수시 시작되지 않은 서비스

②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이나 권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마크, 저작권, 특허 또는 트레이드 마크(단체마크 또는 서비스마크 포함)
2. 거래상 비밀, 기밀정보나 사유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나 사법적 법률 또는 성문법
3. 표현, 아이디어, 초상, 성명, 슬로건, 사업방식, 상징, 타이틀, 상품 외장, 기타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나 사법적 법률 또는 성문법
4. 저작권침해, 불공정 경쟁, 기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권리나 사법적 법률 또는 성문법

③ 「부당한 행위」란 오류, 고의가 아닌 부작위 또는 태만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부당 행위 및 지속, 반복된 부당 행위가 포함됩니다.

④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 (1)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대리인, 피보험자가 취득한 자산·사업을 소유하였던 개인이나 단체가 창안, 개발, (타인에게) 설치, 대여, 인증하거나, 제조, 판매, 취급, 유통하는 상품이나 제품
- (2) 상품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컨테이너(수송 차량과는 별도), 재료, 부품, 장비

2. 제품에 포함되는 내용

- (1) 제품의 적합성, 수행, 품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작된 안내서나 보증서
- (2)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제품과 관련한 설명서나 경고문
- (3) 제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서비스

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대리인, 피보험자가 취득한 자산·사업을 소유하였던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서비스 (관련 컨설팅, 인력 공급, 교육, 기타 지원 서비스 포함)를 의미합니다.

2. 포함되는 내용

- (1) 서비스의 적합성, 수행, 품질,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제작된 안내서나 보증서
- (2)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와 관련한 설명서나 경고문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무사고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회사는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해당 증권에서 발생한 지급보험금이 없이 종료되거나 해당 증권에서 정한 자기부담금(프랜차이즈 공제금액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료의 5%를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은 계약 당시 약정한 보험기간의 종료일 또는 배서를 통해 연장된 종료 시점만을 의미하며, 배서를 통해 보험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보고연장보장기간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종료 시점을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2. 회사가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증권에서 발생된 사고가 통보되는 경우, 사고 금액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계약자는 지급받은 무사고 환급금 전액을 회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될 보험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